

# 무배당 알리안츠웰빙라이프연금보험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 확 인 서

무배당 알리안츠웰빙라이프연금보험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2007년    월    일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선 임 계 리 사 은 원 환

무배당 알리안츠웰빙라이프연금보험

사업방법서 별지

(사업방법서 별지)

###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웰빙라이프연금보험

### 2. 보험의 세목

보험의 종류	보험의 구성	연금지급형태		
		종신 연금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부부계약
1형 (확정금리 분리형)	보장계약 웰빙계약 연금계약	종신 연금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부부계약
		상속 연금		보증금액부 -
2형 (변동금리 분리형)	보장계약 웰빙계약 연금계약	종신 연금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부부계약
		상속 연금		보증금액부 -
3형(통합형)	보장계약 연금계약	종신 연금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부부계약
		상속 연금		-

### 3. 가입나이 및 연금개시나이

보험의 종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Y)
1형, 2형	35세 ~ 70세 [(Y - 10)세]	45세 ~ 80세형
3형	45세 ~ 78세	45세 ~ 78세형

※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남자인 부부계약의 최저 연금개시나이는 48세임

#### 4. 보험기간

보험의 종류	보험 기간	
1형, 2형	제1보험기간	보험계약일부터 Y세(45세 ~ 최고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간 )
	제2보험기간	Y세(45세 ~ 최고 80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3형	보험계약일부터 종신까지	

#### 5. 보험료 납입기간

일시납

#### 6. 납입 보험료 한도

구분	일시납 보험료
미국 달러형	US \$10,000 이상
호주 달러형	AU \$10,000 이상
원화형	₩10,000,000 이상

#### 7. 보험가입금액에 관한사항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일시납 보험료의 100%로 한다.

#### 8.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 9. 통화에 관한 사항

가. 미국달러형 : 이 보험계약의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이하 “미국통화” 라 한다)로 하며, 보험료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미국통화로 한다.

나. 호주달러형 : 이 보험계약의 통화는 오스트레일리아연방의 통화(이하 “호주통화” 라 한다)로 하며, 보험료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호주통화로 한다.

다. 원화형 : 이 보험계약의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이하 “원화통화” 라 한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원화통화로 한다.

## 10. 생존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의 구성비율(이하 “연금구성비율” 이라 한다)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 계약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비율로 선택하여야 한다.

다. ‘가’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구성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 11. 웰빙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1형, 2형에 한함)

가. 회사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웰빙생활자금 투입비율 및 지급주기에 따라 제1보험기간 동안 웰빙생활자금을 지급한다.

나. ‘가’ 의 웰빙생활자금 투입비율은 납입보험료의 40%이내에서 선택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웰빙생활자금 투입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다. ‘가’의 웰빙생활자금 지급주기는 월 지급, 3개월 지급, 6개월 지급, 연 지급이 있으며, 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경과 되는 날부터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3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3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3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6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6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연 지급을 선택할 경우에는 만1년 경과되는 날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웰빙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라.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제1보험기간 중 발생한 웰빙생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개시시점까지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웰빙생활자금과 연금개시시점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금에 더하여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생존연금으로 지급한다.

마. ‘라’의 연금개시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약관의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을 적용한다.

##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의 계약자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1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중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제외)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다.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1) 미국달러형

가)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6 + A_0 - (I - E)} \times \frac{12}{6}$$

(주) ■ I : 직전 6개월간 미국달러자산의 투자수익

■ E : 직전 6개월간 미국달러자산의 투자비용

■ A<sub>6</sub> : 산출시점 직전 6개월초 현재 해당 미국달러 운용자산

■ A<sub>0</sub>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해당 미국달러 운용자산

나)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산출식} = B1 \times 50\% + B2 \times 30\% + B3 \times 20\%$$

(주) ■ B1 : 3년 미국달러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s)율의 직전월 월평균이율

■ B2 : 5년 미국달러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s)율의 직전월 월평균이율

■ B3 : 10년 미국달러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s)율의 직전월 월평균이율

단, 미국달러금리스왑율은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인터넷(<http://federalreserve.gov/releases/>)을 통하여 매일 공시하는 10년, 5년, 3년 미국달러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s)율로 한다.

2) 호주달러형

가)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6 + A_0 - (I - E)} \times \frac{12}{6}$$

(주) ■ I : 직전 6개월간 호주달러자산의 투자수익

■ E : 직전 6개월간 호주달러자산의 투자비용

■ A<sub>6</sub> : 산출시점 직전 6개월초 현재 해당 호주달러 운용자산

■ A<sub>0</sub>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해당 호주달러 운용자산

나)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산출식} = B1 \times 50\% + B2 \times 30\% + B3 \times 20\%$$

(주) ■ B1 : 3년 호주국채최종호가수익률(bid rate)의 직전월 월평균이율



- B2 : 5년 호주국채최종호가수익률(bid rate)의 직전월 월평균이율
  - B3 : 10년 호주국채최종호가수익률(bid rate)의 직전월 월평균이율
- 단, 호주국채최종호가수익률은 블룸버그 통신의 단말기(Bloomberg Terminal)를 통해 매일 공시하는 GACGB10 page, GACGB5 page, GACGB3 page 에 각각 표시되는 10년, 5년, 3년 호주국채최종호가수익률(bid rate)로 한다. (단, 블룸버그 단말기(Bloomberg Terminal)가 유용하지 않을 경우 (Reuter Terminal)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 3) 원화형

#### 가)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6 + A_0 - (I - E)} \times \frac{12}{6}$$

- (주) ■ I : 직전 6개월간 투자수익
- E : 직전 6개월간 투자비용
  - A<sub>6</sub> : 산출시점 직전 6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sub>0</sub>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 나)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산출식} = B1 \times r + B2 \times (1 - r)$$

- (주) ■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단,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 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단,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 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가중이동평균이율 ( $B_i$ )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1)$  :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 라. ‘가’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가’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마.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자산의 경우, 공시 기준이율 산출식의 내부지표는 최초 특별계정 설정 후 1년간은 [외부지표]와 동일한 수치를 적용한다.
- 바. 미국달러형 및 호주달러형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로 하고,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5%, 10년 초과하는 경과기간의 경우에는 연복리 1.0% 한다. 원화형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후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한다.
- 사.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 아.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 13.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 (1형에 한함)

- 가. 1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중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과 16일에 회사가 정한 별도의 공시이율(이하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이라 한다)로 한다.
- 나. ‘가’의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은 회사가 이율확정기간 공시기준이율과 조정이율에 의거하여 각 통화별로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 적용하며, 제1보험기간동안 확정되어 변하지 아니한다.
- 다. 이율확정기간 공시기준이율은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text{이율확정기간 공시기준이율(\%)} = \left\{ A - \frac{\log(100 \times A + 1)}{100} \right\}$$

$$\text{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 = \text{이율확정기간 공시기준이율(\%)} \pm \text{조정이율}$$

(주)

1) 기준금리(A)

가) 미국달러형 :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인터넷 (<http://federalreserve.gov/releases/>)을 통하여 매일 공시하는 10년 미국달러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s)률의 평균값을 매월 1일과 16일에 산출하여 적용한다. 상기 평균값은 매월 1일과 16일부터 과거로 기산하여 4번째 영업일에서 13번째 영업일까지의 10 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나) 호주달러형 : 블룸버그 통신의 단말기(Bloomberg Terminal)를 통하여 매일 GACGB10 Page에 표시되는 10년 만기 호주국채최종호가수익률(Bid rate)의 평균값을 매월 1일과 16일에 산출하여 적용한다. 상기 평균값은 매월 1일과 16일부터 과거로 기산하여 4번째 영업일에서 13번째 영업일까지의 10 영업일 동안의 해당 호주국채최종호가수익률을 산술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원화형 :  $\left\{ \frac{C+D}{2} \right\}$

C: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0년만기 국고채권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을 매월 1일과 16일에 산출하여 적용한다.

D: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만기 무보증 AAA회사채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을 매월 1일과 16일에 산출하여 적용한다. 상기 평균값은 매월 1일과 16일부터 과거로 기산하여 4번째 영업일에서 13번째 영업일까지의 10영업일 동안의 해당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2) 조정이율 : 시장금리의 대표성과 객관성 및 실제금리 적용시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미국달러형의 경우 미국 달러 금리스왑률을, 호주달러형의 경우 호주국채최종호가수익률을, 원화형의 경우 국고채 및 AAA회사채 수익률을 지표금리로 사용한다. 그러나, 과거지표금리가 장래에 적용됨으로써 실제 적용시점의 지표금리와 금리차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많은 경우 실제 투자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가 공시하는 지표금리와 다르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되는 자산의 수익률 (제1보험기간 이내의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에 대해서는 투자될 자산의 예상 수익률)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라. 미국달러형 및 호주달러형의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하고,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1.5%로 하며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로 한다. 원화형의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한다.

#### 14. 보너스 이율에 관한 사항 (1형에 한함)

1형의 경우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금에 대해서 보험가입시점부터 1년간 1.0%의 금리(이하, “초년도 보너스적립이율” 이라 한다)를 더하여 적립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보험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해지된 때에는 “초년도 보너스 적립이율”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5. 시장가격조정률(MVA)의 적용에 관한 사항 (1형에 한함)

1) 제1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금에(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계약 해약환급금으로 한다. 그러나, 해지되는 때의 웰빙계약 해약환급금은 시장가격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시장가격조정률(MVA:Market Value Adjustment)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MVA = 1 - \left\{ \frac{1 + \text{보험가입시점의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1 + \text{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 + 0.4\%} \right\}^{\frac{\text{잔여월수}}{12}}$$

단,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제1보험기간 말일까지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한다.

3) 시장가격조정률(MVA)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4) 장래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위의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과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후에 이를 변경하며, 계약자에게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 직전 1개월 이내에 통지한다.

## 16. 자산의 운용

### 가. 원화형

1) 이 보험의 원화형 자산은 일반계정으로 운용한다.

2) '1' 에도 불구하고, 1형의 제1보험기간 중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해당하는 자산은 특별계정으로 운용한다.

3) '2' 에 해당하는 계약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은 제2보험기간 개시일 전일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되어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되며, 제2보험기간 개시일부터는 특별계정 운용실적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 나. 미국 달러형 및 호주 달러형

이 보험의 미국 달러형 및 호주 달러형의 자산은 특별계정으로 운용한다.

## 17. 특별계정의 설정 및 종류

이 보험계약 중 다음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의하여 각각 별도의 원리금 보장형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한다.

가. 원화 확정금리형 : 1형의 원화형 제1보험기간 중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해당

하는 자산

나. 미국 달러 확정금리형 : 1형의 미국 달러형 제1보험기간 중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해당하는 자산

다. 미국 달러형 : '나'의 미국 달러 확정금리형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한 미국 달러형 계약자 적립금에 해당하는 자산

라. 호주 달러 확정금리형 : 1형의 호주 달러형 제1보험기간 중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해당하는 자산

마. 호주 달러형 : '라'의 호주 달러 확정금리형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한 호주 달러형 계약자 적립금에 해당하는 자산

## 18. 특별계정의 자산의 운용

가. 회사는 해당 공시이율을 보증할 수 있도록 특별계정의 자산을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원화형 : 국고채 및 특수채, 국내 신용평가기관[한국채권평가주식회사(KBP), 한국신용정보(NICE) 등] 2곳 이상에서 신용등급 AA-이상으로 평가 받은 회사채를 80% 이상으로 운용하며, 그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으로 운용한다

2) 미국달러형 : 미국달러로 표시된 국고채 및 특수채,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S&P기준 BBB-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가 받은 회사채를 80% 이상으로 운용하며, 그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으로 운용한다.

3) 호주달러형 : 호주달러로 표시된 국고채 및 특수채,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S&P기준 BBB-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가 받은 회사채를 80% 이상으로

로 운용하며, 그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으로 운용한다.

나.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 적용 자산(단, 유동성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은 제외)의 평균 잔존만기는 부채 잔존만기의 80% ~ 125% 범위 이내에서 유지되도록 한다.

다.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가’ 및 ‘나’ 에서 정한 자산 운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금리 급변, 대량 해약 등의 급격한 시장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2) 운용하고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 하락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3) 운용자산의 즉시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 4) ‘1) 내지 ‘3)’에 준하는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라. ‘가’ 내지 ‘다’ 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 설정시점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 또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총 자산이 1,000억 미만인 경우 회사는 ‘가’ 내지 ‘다’ 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마.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특별계정의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및 보험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19.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이체사유가 매일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2)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1) 사망보험금 및 생존연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2)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3)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4) 매월 계약해당일에 예정사업비 및 보장계약 순보험료를 충당하는 경우(단, 예정사업비 및 보장계약 순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5)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가’ 항 및 ‘나’ 항에 따라 자금이체시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 이자는 회사의 대출우대금리로 한다.

## 20. 기타사항

가. **연금개시시** 계약자 적립금의 원화전환에 관한 사항

1형 및 2형의 미국달러형 및 호주달러형 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연금을 원화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개시시** 계약자 적립금을 연금개시시점에서 원화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신청 :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15일 이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연금개시시** 계약자 적립금 원화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전환시기 : 연금개시일



### 3) 원화환산기준

환산기준일	환산비율
연금개시일의 전일	TTB

※ 환산기준일 : 원화 환산의 기준이 되는날(회사의 주거래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직전 주거래 은행의 영업일로함)

※ TTB : 회사의 주거래 은행이 고시(최종고시환율)하는 미국달러화, 호주달러화의 대고객전신환매입률

4) 원화로 전환한 **연금개시시** 계약자적립금의 공시이율은 원화형에 적용되는 공시이율로 한다.

### 나. 계약자 적립금의 원화 평가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 적립금의 원화 평가는 평가일 기준 “한국은행 공시 환율”의 증가 환율을 적용한다. (이하 “기준환율”이라 한다.)
- 2) 평가일 증가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직전 고시일의 **증가** 환율을 적용한다.
- 3) 장래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기준환율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후에 이를 변경한다.

### 다.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단, 1형의 제1보험기간 중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 + 1.5%」로 한다.

### 라.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
- 2) ‘1)’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 대비 90%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마.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